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내 수 면 어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 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5.18. ~6.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내수면어업 세부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 ----- ----- -----.
<u><신 설></u>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44) 200-5637